#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

#### I . 목 적

- □ 이 가이드라인은 「금융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'「금소법」') 제 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설명하여야 할 사항 중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 산정과 관련하여 위험 등급 산정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□ [관계법규] 금소법 §19, 시행령 §13② 및 §13③, 감독규정 §12

#### Ⅱ. 위험등급 산정의 일반원칙

# 1. 적용대상 금융상품

- □ 일반금융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모든 투자성 상품으로 지분증권, 채무증권, 집합투자증권, 파생결합증권, 파생상품, 신탁계약, 일임계약 등을 포함하되, 「금소법」시행령 제13조제2항 각 호의 상품\*을 제외한다.
  - \* 연계투자 및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계약
- ☞ [관계법규] 금소법 시행령 §13②

# 2. 위험등급 산정의 주체

- □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(이하 '판매회사')는 「1. 적용대상 금융상품」에 포함되는 투자성 상품의 판매 전에 해당 상품의 위험등급을 산정한다.
  - ☞ [관계법규] 금소법 §19①제1호나목3

- □ 판매회사가 정한 위험등급과 금융상품 제조회사가 정한 위험등급이 다를 경우, 판매회사는 제조회사와 위험등급의 적정성에 대해 협의한다.
- ☞ [관계법규] 금소법 감독규정 §12②제3호
- □ 판매회사는 금융상품 판매 시 당해 금융상품의 제조회사가 정한 위험 등급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 위험등급을 판매회사가 정한 위험등급으로 사용할 수 있다.
  - 단,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조회사가 정한 위험등급의 적정성을 확인하며, 그 절차와 방식 등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\*에 따른다.
    - \* (예) 신상품은 상품출시 관련 의사결정 단계에서 위험등급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기존 상품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에 따라 선정한 표본 상품을 대상으로 등급산정 방법론 및 적정성을 검증하며, 이를 위한 내부 기준을 수립하는 등 내부통제 절차 마련

#### 3. 위험등급 체계

□ 위험등급은 최소 6단계 이상으로 구분하고, 1등급을 가장 높은 위험으로 하며 그 수가 커질수록 위험도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.

### 위험등급 구간별 명칭(예시)

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6등급
	높은 위험	다소 높은 위험	보통 위험	낮은 위험	매우 낮은 위험

### 4. 위험등급 산정방식

- □ 판매회사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\*을 고려하여 각 위험요소별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여 위험등급 산정시 반영하고, 그 밖의 구체적인 것은 'Ⅲ. 상품유형별 위험등급 산정기준'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.
  - \* ①기초자산의 변동성, ②신용등급, ③상품구조의 복잡성, ④최대 원금손실 가능액, ⑤환매·매매의 용이성, ⑥환율의 변동성, ⑦그 밖에 원금손실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
- ☞ [관계법규] 금소법 §19①제1호나목3, 시행령(§13③) 및 감독규정(§12)

- ① 시장위험\* 등급은 투자성 상품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「Ⅲ. 상품유형별 위험등급 산정기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6단계(또는 그 이상)로 산정 하다.
  - \* 기초자산의 변동성 등 시장가격 변동에 따라 상품의 가치가 변동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원금손실 위험을 통칭
- ② 신용위험\* 등급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335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 또는 외국에서 이에 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국제 신용평가회사(이하 "신용평가회사")가 부여한 신용등급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.
  - \* 발행자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통칭
  - 국내신용등급과 해외신용등급이 상이한 경우, 국내 신용등급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외 신용등급만 있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[별표5] 35호 라목에 따라 국내 신용등급으로 전환할 수 있다.

#### <표1>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른 신용위험등급 분류

구분	6등급(저위험)	5등급	4등급	3등급	2등급	1등급(고위험)
장기등급	국공채 등 <sup>주1)</sup> , AAA~ AA-		A+ ~ A-	BBB+ ~ BBB-	BB+ ~ BB-	B+ 이하 또는 무등급
단기등급	A1		A2	A3	B 이하 또	는 무등급

- 1) 자본시장법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급보증 등으로 사채권에 비해 신용위험이 낮다고 인정되는 채무증권
- 2) 신용평가회사에 따라 등급 표시방법이 상이한 경우 상기 등급체계를 준용
- ③ 시장위험 등급과 신용위험 등급을 모두 산정하는 상품의 경우「Ⅲ. 상품 유형별 위험등급 산정기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위험과 신용위험을 모두 고려한 종합 위험등급을 산정한다.
- ④ 외국통화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상품\*의 경우, 환율의 변동성 위험을 고려하여 종합 위험등급을 1등급 상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 - \* 외화표시 파생결합증권, 외화표시 집합투자증권, 해외채권 등

- 다만, 해당 외국통화의 변동성이 매우 높아 투자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2개 등급을 상향할 수 있고,
- 환율위험에 대한 헤지가 이루어져 환율의 변동성이 투자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히 줄어들거나 그 밖에 다른 방식으로 환율위험이 위험등 급에 이미 반영된 경우 등 등급 상향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급을 상향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⑤ 유동성위험은 해당 상품의 중도환매 가능 여부 및 중도환매시 비용의 정도에 따라 '중도환매 불가', '중도환매시 비용발생', '중도환매 허용' 3단계로 구분하고, 관련 세부사항<sup>\*</sup>은 별도로 기재한다.
  - \* 중도환매 시 발생하는 비용의 수준 등 환매의 용이성을 제한하는 요소 세부내역
  - 또한 상품 구조상 중도 환매·매매 등에 제약이 없더라도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 밖에 시장 상황에 따라 거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환매·매매의 용이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유동성위험에 관한 사항으로 별도 기재한다.
  - 판매회사는 상품의 특성에 따라 유동성위험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험등급에 직접 반영(등급 상향)할 수 있다.
- ⑥ 「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 제7호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은 상기 위험등급 산출 방식에도 불구하고 2등급 보다 낮은 등급을 부여할 수 없음을 원칙\*으로 한다.
  - \* 모든 위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종 위험등급이 2~6등급인 경우 2등급을 부여하고 최종 위험등급이 1등급인 경우 그대로 1등급 부여
- ⑦ 판매회사는 상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타 원금손실 등 상품의 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위험등급 산정시 반영할 수 있다. 또한 「Ⅲ. 상품별 위험등급 산정 기준」에 따라 인정된 위험등급이 실제 위험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험등급을 상향하는 등 조정할 수 있다.

# 5. 위험등급 산정 시기

위험등급은	해당	금융상품	·을 판미	내하는 시	]점에 1호	회 산출히	는 것을	원칙
으로 하되,	수시 기	판매 및	환매가	가능한	상품(예	: 개방형	펀드)의	경우
연 1회(매년	· 결산/	시점) 등 <sup>-</sup>	급을 재	산정한디	<b>├</b> .			

 다만, 재산정 주기가 도래하지 않더라도 시장상황 급변 등으로 특정 위험요소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기타 현재 사용중인 위험 등급이 시장 상황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판매회사의 판단에 따라 위험등급을 재산정할 수 있다.

#### 6. 위험등급 관련 내부통제

□ 판매회사는 신규 상품을 출시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상품 출시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해당 상품의 위험등급의 적정성 평가·검토 절차를 반영하고 이미 판매중인 상품의 위험등급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한다.

### 7. 위험등급의 표시·설명 방법

] 판매회사는 금융상품의 위험등급(유동성에 관한 별도 등급이 있는 경	우
이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설명함에 있어서 각 위험등급별로 다	·른
색상으로 나타내는 등 고객이 각 등급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이해하	・フ]
쉽게 표시한다.	

- 또한 위험등급 산정에 반영한 중요 위험요소 중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충실히 기재·설명한다.
- □ 판매회사는 위험등급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위험등급의 의미와 유의사항, 해당 위험등급으로 정해진 사유를 함께 설명함으로써 투자자가 그 위험등급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.
- ☞ [관계법규] 금소법 감독규정 별표3 제2호

#### Ⅲ. 상품별 위험등급 산정 기준

#### 1. 장내파생상품

- □ 장내파생상품은 투자원금을 초과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1등급(가장 위험도가 높은 등급)을 부여한다.
  - ※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일반투자자에게는 헤지 목적 거래만 허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별도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.

#### < 예시 > 장외파생상품 위험도 분류

가. 주의 : 금리스왑, 옵션매수 (원금 초과 손실이 가능하나, 손실범위가 제한적인 상품)

나. 경고 : 통화스왑, 옵션매도, 선도거래 (손실범위가 무제한이나, 구조가 단순한 상품)

다. 위험 : 가, 나를 제외한 그 밖의 장외파생상품 (손실범위가 무제한이고, 구조가 복잡한 상품)

#### 2. 집합투자증권

#### (1) 공모펀드

□ 설정 3년 미만 펀드의 경우 <표2>에 따라 편입대상 자산의 상품군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분류한다.

#### <표 2> 설정 3년 미만 펀드의 상품군별 위험등급 분류

등급	국내투자 신규펀드 등급 분류기준
<u>1등급</u>	①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
(매우	② 최대손실률이 20%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
높은위험)	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
<u>2등급</u>	① 고위험자산에 80%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
(높은위험)	②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
<u>3등급</u>	① 고위험자산에 80%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
(다소	② 최대손실률이 20%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
높은위험)	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
<u>4등급</u> (보통위험)	① 고위험자산에 50%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중위험자산에 최소 60%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
<u>5등급</u> (낮은위험)	① 저위험자산에 최소 60%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
<u>6등급</u>	①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(MMF)
(매우	②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
낮은위험)	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

- 1. "고위험자산"은 주식, 상품, REITs, 투기등급채권(BB+등급 이하),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
- 2. "중위험자산"은 채권(BBB-등급 이상), CP(A3등급 이상),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
- 3. "저위험자산"은 국공채, 지방채, 회사채(A-등급 이상), CP(A2-등급 이상),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
- □ 설정 3년 경과 펀드는 출시이후부터 등급산정 기준일까지의 최근 3년간 일간수익률을 토대로 <표3>에 따른 위험등급을 부여한다.

**<표 3> 시장위험 등급 기준표**(97.5% VaR 모형\* 사용)

	1등급 (고위험)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6등급 (저위험)
97.5%	60% 초과	60%	40%	20%	10%	1%
VaR		이하	이하	이하	이하	이하

- \* 과거 3년 일간 수익률에서 2.5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 $(\sqrt{250})$ 를 곱해 산출
- 레버리지·인버스 ETF\*는 VaR로 산출한 위험등급에서 1등급 상향한다.
  - \*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변화에 1배를 초과한 배율로 연동하거나 음의 배율로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 투자증권
- 과거 수익률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평가가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집합투자증권의 경우, 투자대상, 손실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설정한 기준에 따라 위험등급을 부여한다.
- 다만, 채권형 및 채권혼합형 펀드는 수익률 변동성에 신용위험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\* 편입자산의 신용위험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을 상향할 수 있다.
  - \* (예) 장외채권이거나 매매시장에서의 유동성이 낮아 시가변동이 미미한 경우
- □ 환율위험 및 유동성위험은 'Ⅱ.위험등급 산정의 일반원칙'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# (2) 사모펀드

□ 사모펀드는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공모펀드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모펀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시장위험을 산출한다.

- □ 공모펀드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판매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별도의 위험등급 산정 기준에 따라 상품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.
  - 다만, 별도 등급산정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가능한 객관적 자료에 근거 하여 합리적인 등급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,
  - 이 경우 별도로 산정된 위험등급은 2등급 이상으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#### 3. 파생결합증권

□ (종합등급) 시장위험등급과 신용위험등급을 각각 산정한 후 <표4>에 따라 종합 위험등급을 산정한다.

<표4> 시장위험등급(MR)과 신용위험등급(CR)을 통한 종합 등급산출

구 분 <sup>*</sup>	MR1 (고위험)	MR2	MR3	MR4	MR5	MR6 (저위험)
CR1(고위험)	1	1	1	1	1	1
CR2	1	2	2	2	2	2
CR3	1	2	3	3	3	3
CR4	1	2	3	4	4	4
CR5	1	2	3	4	5	5
CR6(저위험)	1	2	3	4	5	6

※ 주: MR은 시장리스크(Market Risk) 등급, CR은 신용리스크(Credit Risk) 등급

□ (시장위험)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성, 기초자산 개수, 원금손실조건(낙인 배리어 수준 등),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회사별로 상품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.

#### 파생결합증권 평가 세부기준(예시)

- □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 20%를 초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2등급을 부여하고,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20%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3~5등급\*을 부여
  - \* 원금 부분보장비율 수준에 따라 등급 세분화(95% 이상 5등급, 90% 이상 95% 미만 4등급, 80% 이상 90% 미만 3등급)

□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1개 등급 상향 ○ **(기초자산의 개수)** 기초자산의 수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○ **(기초자산의 종류)** 특수한 형태의 기초자산에 연계되어 상품구조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능성이 낮은 경우 ○ (기초자산 가격의 변동성) 과거 10년간 기초자산의 일간수익률의 연환산 표준 편차가 일정 수준(예: 25%)을 초과하는 경우 ○ (원금손실조건) 낙인배리어(Knock-In Barrier)가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(예: 60% 이상) 또는 낙인배리어가 없는 노낙인형 상품의 만기베리어 요건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(예: 70%) ○ (**레버리지 여부**) 손실발생구간의 손실배수가 기초자산 변동률의 1배를 초과하는 경우 ※ 그밖의 판매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을 추가로 설정하거나 조정 가능 □ 상장지수증권(ETN)은 1~2등급 내에서 상품의 구조, 기초자산의 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등급을 분류하되, 일정요건\*을 충족하는 경우 1등급을 부여하다. \* 기초자산의 1배를 초과한 배율로 연동, 음의 배율로 연동, 해외지수·상품 또는 기타 특수한 형태의 기초자산을 추종하는 경우 ㅇ 다만, 기초자산의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공모펀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개별적으로 위험등급을 산정할 수 있다. □ (신용위험) 발행사의 신용등급을 기초로 분류하되, <표1>의 기준을 준용한다. □ 환율위험 및 유동성위험은 'Ⅱ.위험등급 산정의 일반원칙'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 □ 주식워런트증권(ELW)은 1등급(가장 위험도가 높은 등급)으로 분류한다.

### 4. 지분증권(주식 등)

- □ 지분증권의 경우 원칙적으로 2등급을 부여하되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한 등급을 상향할 수 있다.
  - 비상장 주식은 1등급 상향한다.

- 해외거래소 상장종목은 1등급 상향한다.
- 한국거래소의 투자주의·경고·관리종목은 1등급 상향한다.

### 5. 채무증권

- □ 발행사의 신용등급, 보증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을 부여하되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최종 위험등급을 산정한다.
  - 회사채<sup>\*</sup>는 <표1>에 따라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을 고려하여 분류하되, 외부기관의 보증이 있는 경우 보증기관의 신용등급을 감안한다.
    - \*「자본시장법」제4조③ 및 ⑦ 제1호에 해당하는 사채권(파생결합사채) 포함
  - 환율위험 및 유동성위험은 'II.위험등급 산정의 일반원칙'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되,
    - 해외채권의 경우 해당국 통화의 종류에 따라 환율위험을 적극적으로 고려(위험등급을 0~2등급\* 상향)하고,
    - \* 예) 변동성이 큰 신흥국 통화로 투자되는 경우와 같이 환율위험이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개 등급 상향 가능
    - 당해 채권이 유통되는 해외 시장의 특징 및 환매 또는 매매가 제한될 가능성 등 유동성위험에 관하여 보다 상세히 기재한다.

# 6. 특정금전신탁

- □ 특정금전신탁은 편입 대상 자산의 위험등급을 기준으로 신탁계약의 위험 등급을 정하되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등급을 산정한다.
  - 단일 상품이 편입된 신탁계약(예: ELT)의 경우 편입 자산의 위험등급을 신탁계약의 위험등급으로 적용한다.
  - 신탁계약에 복수의 자산을 편입하는 경우 편입된 자산별로 위험등급을 부여하고 개별 편입자산의 위험등급을 설명한다.
  - 비지정형 신탁의 경우 신탁계약상 편입 가능한 투자대상 자산의 최고 위험등급을 해당 신탁계약의 위험등급으로 간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

- 헤지 목적으로 파생상품\*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의 위험등급 산정시 해당 파생상품의 위험등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.
- \* 헤지 목적 파생상품의 범위는 금융투자업규정 제1-2조의4 ④ 후단(고난도금융투자 상품 해당 여부 판단시 제외하는 파생상품의 범위에 관한 규정) 준용

#### 7. 투자일임계약

- □ 투자일임계약상 편입 가능한 투자대상 자산의 최고 위험등급을 해당 투자일임계약의 위험등급으로 간주하는 것을 워칙으로 한다.
  - 다만, 사전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제시하고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총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상품의 경우, 포트폴리오내 개별 상품의 위험등급을 각 상품별 편입 비중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전체 투자일임계약의 위험등급으로 적용할 수 있다.
  - 헤지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6.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와 동일하게 일임계약의 위험등급 산정시 해당 파생상품의 위험등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.

### 8. 변액보험

- □ 투자성 상품에 해당하는 변액보험\*에 한하여 변액보험 내 펀드별로 위험 등급을 부여한다.
  - \* 만기에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변액보험
  - ㅇ 펀드의 위험등급은 집합투자증권의 위험등급 산정 방법을 준용한다.

# 9. 기타

□ 판매회사는 특정 투자성 상품에 대하여 이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계 법규 및 이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일반원칙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인 위험등급 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위험등급을 산정할 수 있다.

# IV. **보칙**

□ 이 가이드라인은 '23.10.1일 이후 신규로 판매되는 금융상품의 위험등급 산정시부터 적용하고, 기존에 판매된 상품에 대해서는 '23.10.1일 이후 'Ⅱ-5. 위험등급 산정시기'에서 정한 재산정 시점이 도래한 때부터 적용한다.